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7
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 및 제출자** :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

2. **회부일자** : 2019년 4월 3일

3. **상정일자** :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 19일 1차상정·검토보고·심사보류】

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4월 24일 2차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)

1. 제안이유

○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
○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 참조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조례안의 개요

○ 동 개정안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현재 정책 기대효과에 비해 저조한 이용률로 정책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제로페이 이용자 감면 사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[1],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

---

1) **제136조(사용료)**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○ 이에 개정안은 서울상상나라의 입장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에게 입장료의 30%로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임.

○ 감면 기준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시설별 수요 탄력성 및 이용요금 고려하여 차등 적용을 원칙으로 이용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높거나 이용료가 낮아 체감도를 높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% 내·외 할인율 적용하고, 시설 이용수요가 높아 제로페이 이용자 확대 기여도가 낮거나 이용요금이 높아 할인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5% 내·외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음.

〈제로페이 감면 적용안〉

이용요금 / 수요탄력성	수요탄력성 낮아 이용 확장성 낮은 시설	수요탄력성 높아 이용 확장성 높은 시설
이용요금이 높은 시설	5% 이하	10% 이하
이용요금이 낮은 시설	10% 이하	30% 이하

*5% 이하 : 이용요금은 높은데 확장성이 낮은 시설, 예) 대관료 등
*10% 이하 : 이용요금도 낮고 확장성도 낮은 시설, 1회 이용요금은 높으나 확장성이 높은 시설, 예) 주차요금, 사용료 등
*30% 이하 : 이용요금이 낮고 확장성도 높은 시설, 예) 입장료 등

---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○ 현재 법이나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대상자, 경로자, 영유아, 70세 이상 부모부양자, 자원봉사자, 다자녀·다둥이 가정, 모범납세자, 병역명문가 등에게 공영주차장이나, 체육·문화시설 및 시립 장례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감면을 제공하고 있는데, 기존의 감면 대상은 취약계층이거나 그 공로를 인정하여 혜택의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,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동 조례안에 따른 감면은 그 당위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.

○ 한편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입장료 감면 시, 기존 연회비 이용고객에게는 별다른 편익이 없고, 민간에서 경쟁 관계로 인식하는 경우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□ **한시제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성**

○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감면조치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될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해보아도 최대 6개월내외의 기간 동안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.

○ 개정안을 통한 감면이 제로페이 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시비를 통한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한정 지속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, 지방자치단체를 범위로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례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제도는 통상 안정적이고 지속

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, 비교적 단기로 판단되는 6개월이라는 감면 시행 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3 종합 의견

○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립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
○ 다만 감면의 사유가 타 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와는 다소 이질적이고, 6개월이라는 한시적 시행으로 인한 제도의 불안정 문제,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붙임 : [별표 1] 서울상상나라 연회비 및 입장료등(제5조제3항 관련)

1. 입장료

구 분		입장요금	비 고
개인	만 3세(36개월) 미만	무료	관련 증명서 지참
	만 3세(36개월) 이상	4,000원	
단체	만 3세(36개월) 이상	3,000원	20명 이상 (인솔성인: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)
1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.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.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6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. 어르신(만 65세 이상) 8. 서울상상나라 회원(연회비 납부자에 한함)		무료	관련 증명서 지참 (복지카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

2. 수강료 및 관람료

구 분	개 인	단 체 (20명 이상)	비 고
수강료	30,000원 이하	-	○1회 기준 ○각 프로그램별 소요 교재비, 재료비 포함 ※ 무료강좌일 경우 재료비는 필요 시 별도 수납가능
관람료	30,000원 이하	개인요금의 80% 이하	○1회 기준

3. 연회비

구 성	금 액	비 고
2인 가족	30,000원	
3인 가족	40,000원	
4인 가족	50,000원	1인 추가시마다 10,000원 추가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Ⅴ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Ⅵ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9명, 찬성위원 6명, 반대위원 1명, 기권위원 2명】

Ⅶ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87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“제로페이”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감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(안 제6조제2항)

나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2. 21. ~ 3. 13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)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입장료의 감면) (생 략) <신 설>	제6조(입장료의 감면) ① (현행 제6조 제목 외 부분과 같음)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를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경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상상나라 이용자의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 감면 혜택 부여로 인한 시설의 손해 발생 및 감면에 따른 손실 보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손해 발생 보전액이 37백만원으로 예상되어, “한시적인 경비로서 10억원 미만인 경우”에 해당됨

- 산출내역: 615백만원[1)]×30%(이용률)×20%(할인율)=37백만원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추 인 순 (02-2133-5113)

1) ‘19년 5월~12월 서울상상나라 입장객 수입 예상액임